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416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**부수업무 신고 기관** : 신한카드㈜

2. **부수업무의 신고일** : '22.11.10.

3. **부수업무의 내용**

◦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 제공

◦가명·익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

◦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기초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

◦개인사업자 신용정보 관련 시스템, 솔루션 및 SW 개발·판매

*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3항제1호, 제11조의2제3항제3호, 제11조의2제3항제4호, 제11조의2제3항제5호